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5 선고 2017가단5061856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신용보증기금

피고1. 주식회사 A

2. B

변론 종결2018. 9. 7.

판결 선고2018. 10. 5.

주 문

1. 피고 주식회사 A,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1,329,043원과 그중 39,964,203원에 대하여는 2016. 12. 23.부터 2017. 5. 25.까지는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.

판사김지영

별지